

「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」 제출 안내

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(개별기업보고서, 통합기업보고서, 국가별보고서) 제출대상
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
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(예 : 2020.12월말 법인은 2021.12.31.까지 제출)

다음과 같이 제출대상 및 제출방법 등을 안내해드리오니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어
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§16, 동법시행령 §33~35)

제출대상

- (개별·통합기업보고서) ①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이 1천억 원을 초과하고 ② 국외특수관
계인과의 거래금액 합계액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
- (국가별보고서) 다음의 ①과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- ①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1조 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내
지배기업으로서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
 - ②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(상당액)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
그룹으로서 국외에 최종모회사가 있는 국내 관계회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가. 최종모회사 소재지국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경우
나. 최종모회사 소재지국과 우리나라 간 국가별보고서가 교환되지 않는 경우
다. 국내관계회사가 「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」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

제출방법

다음의 사이트 접속을 통한 전자제출만 가능합니다.

- (개별·통합기업보고서) 홈택스(www.hometax.go.kr)
- (국가별보고서) AXIS 포털(www.axis.go.kr)

제출기한

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

- * (유의사항) 보고서를 미(거짓)제출한 경우 보고서별로 3천만원의 과태료가
부과될 수 있습니다.

◆ 궁금하신 사항 문의

서울청	02-2114-2963	중부청	031-888-4956
대전청	042-615-2473	광주청	062-236-7474
대구청	053-661-7475	부산청	051-750-7438
인천청	032-718-6485	-	-

- ◆ 「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」제도와 관련한 서식 등 세부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(www.nts.go.kr)
국세정책/제도 > 국제조세정보 > 국제조세 주요 신고제도 >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를 참고하시기
바랍니다.

